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李英順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英順議員 文化教育委員會 李英順議員입니다.</p> <p>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우리가 本會議에 상정한 安企部法 및 勞動法改正撤回促求決議案은 좀전에 우리 金聖浩議員님께서 議會의 절차를 무시하고 本會議에 상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시에는 運營委員會를 거치지 않고 本會議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 議員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p> <p>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부분은 논의로 하고, 지금 현안의 이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많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더욱이 민심이 이원이 되면서 현 정권의 여러 가지 통치 한계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권리의 수호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최소한의 본연의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행동의 한 일환이며, 이것을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보람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p> <p>다음에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民주秩序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이 때에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政權의 체면의 한 부분으로 이것을 날치기 통과한 부분을 어거지로 수호하고자 한다면 향후 大韓民國의 앞날이 더욱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議員의 신분으로서 할 도리를 서울市議會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大韓民國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 또 大韓民國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議員님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本議員의 찬성</p>	<p>발언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정숙해 주세요.</p> <p>어떻습니까? 金聖浩議員. 黨으로서 나와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또 反對討論도 贊成討論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贊反으로 갈까요, 이 정도로 해서 그냥.....</p> <p>(「表決로 해 주십시오」하는 議員 있음)</p> <p>表決해요? 이것 決議案인데.....</p> <p>(「表決로 합시다」하는 議員 있음)</p> <p>그래요? 좋습니다.</p> <p>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表決할 것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그러면 安企部法 및 勞動法改正撤回促求決議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起立 表決)</p> <p>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起立 表決)</p> <p>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在席議員 121명 중 贊成 105명, 反對 16명, 기권 없습니다.</p> <p>安企部法 및 勞動法改正撤回促求決議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정 철회 촉구 결의안</p> <p>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정부·여당은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의원총회를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기습통과시켰다.</p> <p>1997년 희망찬 새해 전설로 부푸는 이 때, 벽두부터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변칙처리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각계각층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과 좌절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p> <p>이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여당의원들만으로 단 7분만에 날치기 통과 처리한 안기부법·노동법 개악 때문이다.</p> <p>이는 절차상으로도 무효일 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상으로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p>
---	--

4 (第91回-第1次)

적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할 수 있는 독재적 발상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일말의 민주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법안들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안기부법은 군사독재시절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이용됐던 안기부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내용으로써 민주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민을 위해 매우 불안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노동법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천만 노동자들을 엄청난 고용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 아니라,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 등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허용의 3년간 유예 등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이번 노동법 개악은 천만 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된 채 소수 재벌들의 이해에 따라 만들어진 반노동자적,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새해에는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아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체적 역량을 모아야 할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법률개정처리결과가 어떤 것인지 깊이 해야 하고, 국민이 그토록 맹렬히 반대하는 이유와 현재의 요구에 대해 이성적으로 통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마당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부 또는 각계각층과의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이번 총파업사태를 수습하고 진정한 노사관계 개혁을 실현하며, 경제회복을 이룩하는 올바른 방편이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에 역행하는 안기부법도 각계각층의 의사에 따라 원상복구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기습통과시킨 안기부법 및 노동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99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4.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58分)

○議長 文一權 의사일정 제4항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常任委員會의 委員은 議長이 추천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委員會條例 제4조 규정에 규정된 委員會 委員 정수에 따라 각 常任委員會別推薦名單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후반기 常任委員會 委員을 선임함에 있어서 고려된 몇 가지 기준을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政黨別 議席比率에 따라 각 常任委員會 政黨別 委員數를 할당하고, 각 議員으로부터 배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 상임위원회를 신청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95% 정도는 1·2·3안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신 위원회에 배정하고, 5% 정도는 諸般事情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습니다만,一部 委員會에 편중하게 희망하시는 이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의원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委員會에 만족스럽게 배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委員配定에 대한 고충을 심문 이해하여 주시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本案件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각 常任委員會別 委員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常任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다음 페이지에 계속)